

# (사)한국지반공학회 상별위원회 운영 규정

2005년 12월 1일 제정  
2007년 4월 27일 개정  
2010년 9월 10일 개정  
2011년 9월 22일 개정  
2016년 8월 22일 개정  
2018년 6월 7일 개정  
2020년 2월 3일 개정  
2020년 8월 1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반공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이하 학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별위원회 구성)

- ① 상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의 일인을 간사로 한다.
- ② 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맡고 간사는 위원장이 선정한다.
- ③ 학회의 국제담당 부회장, 기획·학술연구용역 부회장, 학술 전담이사, 기획 전담이사, 국제 전담이사, 국문논문집 전담이사, 영문논문집 전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상기 ②항 및 ③항에서 정한 위원장, 간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학회에서 임명 받은 임기와 동일하며,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 제3조(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4조(상의 종류) 학회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상
2. 학술상
3. 기술상
4. 특별상
5. 학회장상
6. 논문상
7. IJGE Awards

8. 젊은 지반공학인 논문상

9. Korean Geotechnical Society Lecture

10. 김수일 기념상

제5조(수상자격 및 수상자 수) ① 학회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회원은 학회 정관 제5조에서 정한 모든 종류의 회원(단체를 포함)을 말한다.

1. 심사 당해년 말일을 기준으로 학회 회원으로 가입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
2.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자
3. 회원으로서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② 상별로 수상자격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상을 수상한 자는 제외한다. 수상자 수는 연간 인원이며, 단체의 경우도 개인으로 간주한다. 수상자 수는 위원회 의결과 회장의 승인을 통하여 소폭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만 40세 이하인 회원의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①항 1호에서 정한 가입경력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로상 : 학회 또는 지반공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1인. 단, 퇴임하는 회장은 별도
2. 학술상 : 지반공학의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총 3인 이내
3. 기술상 : 지반공학의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총 3인 이내
4. 특별상 : 학회의 운영재원을 기부하거나 또는 학회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로 총 2인 이내
5. 학회장상 :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총 7인 이내로 하며, 만 40세 이하인 자를 2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6. 논문상 : 학회 국문논문집에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로 1인
7. IJGE Awards(영문논문상) : 학회 영문논문집에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로 1인
8. 젊은 지반공학인 논문상 : 독창적이고 우수한 논문을 학회 논문집(국문 또는 영문)에 발표한 만 40세 이하의 자로 1인
9. Korean Geotechnical Society Lecture(이하 KGS Lecture) : 학회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회원 중 연구 활동을 통하여 국내외 지반공학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으로서 1인.
10. 김수일 기념상 : 지반공학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학술 분야 1인 및 기술 분야 1인

③ ①항 및 ②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상, KGS Lecture는 위원회 의결과 이사회 승인을 통해 학회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매년 10월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수상후보자 추천을 공지하고,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

② 논문상, IJGE Awards, 젊은 지반공학인 논문상은 사무국장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각 논문점수를 산정하여 최다득점자 순으로 각 3인을 추천한다.

③ KGS Lecture 수상후보자는 3인 이상이 추천되도록 한다.

④ 김수일 기념상은 ‘김수일 학술상’과 ‘김수일 기술상’으로 구분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제7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의결로서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이 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토론,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상에 대해서는 수상후보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이사회에 인준을 요청하며,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수상자로 확정한다.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수상후보자를 변경하여 재상정하지 않고 그 상의 당해년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수상자는 매년 학회 정기총회 개최 전 학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⑤ KGS Lecture 수상자는 수상 직후에 개최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강연을 하고, 강연 내용을 학회 논문집(국문 또는 영문)의 논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김수일 기념상 수상후보자 심사시에는 고인의 유족과 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2인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이중포상 등의 금지) 학회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당해년에 이중으로 포상하거나,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동일한 상을 포상할 수 없다. 단, 논문상과 IJGE Awards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9조(시상 등) ① 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② 시상은 상패로 하며 논문상, IJGE Awards, 젊은 지반공학인 논문상, KGS Lecture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때 상금의 규모는 과거 사례를 고려하여 상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KGS Lecture 수상자가 국외 거주자일 경우는 제7조 ⑤항의 이행을 위해 소정의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김수일 기념상은 각 분야별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상금의 규모는 상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④ 수상자가 시상식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한다. 또한 시상 후 표절, 허위사실 등을 포함한 결정적 하자가 발견된 때에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⑤ KGS Lecture 수상자가 제7조 ⑤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한다.

제10조(징계) 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방안을 제안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폐) 이 규정의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한다.

[별표1]

## 논문상, IJGE Awards, 젊은 지반공학인 논문상 선정 기준

구분	상의 종류		
	논문상	IJGE Awards	젊은 지반공학인 논문상
수상대상 논문	당해년 말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국문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연구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한 것이어야 함	당해년 말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IJGE(영문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당해년 말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국문논문집 또는 IJGE에 게재된 논문
수상자 자격	위 수상대상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수상 심사일 기준으로 직전년도에 해당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이 있는 자		좌측 자격에 더해 당해년 말일 기준으로 만40세 이하인 자
논문점수 평가	1. 당사자가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함 2. ‘게재건수점수’와 ‘인용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 ① 게재건수점수 평가 : 게재 논문 건당 점수 부여(건당 점수 × 기여도) - 논문 1건당 점수 20점 - 기여도 : 단독저자 1.0 / 공동저자는 2인까지 0.7, 3인 이상은 0.5 ② 인용점수 평가 : 대상 논문이 인용된 횟수를 기준으로 건당 점수 부여 - 피인용 건당 10점 (동일 저자인 경우 제외)		
기타	1. 사무국장은 관련 전담이사 등과 협조하여 논문점수를 산정하고 최다득점자 순으로 3인을 상별위원회에 추천함 2. 상별위원회는 논문점수와 논문의 수준 및 학술적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된 자 중 수상후보자를 선정함		